

김지현 이혼소송 전략 분석 보고서

이혼소송 전문 AI 법률 플랫폼

분석일: 2026년 9월 18일 | 분석 문서: 1건 | IBLY AI

목차

- 사건 개요
-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 관련 법률
- 법률 적용 분석
- 증거 분석
- 결론 및 소송 전략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14년간의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의 계속적 부정행위, 폭력, 생활비 감액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안으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배우자 및 상간자),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복합된 가사소송입니다.

당사자

- 원고(처):** 김지현(만 41세), 현재 학원 파트타임 강사(월 약 120만원)
- 피고(부):** 박성훈(만 44세), 중견 제조업체 부장(세전 연봉 약 9,800만원)
- 미성년 자녀:** 박서연(2014년생, 초6), 박준우(2018년생, 초2)
- 상간자:** 이OO(피고 직장 후배, 여)

주요 쟁점

- 재판상 이혼 사유의 존부(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 재산분할의 범위 및 비율(특히 아파트 기여도, 퇴직급여, 은닉 재산)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적정 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
- 증거의 적법성(태블릿 메신저 확인)

2.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시점	사실
2012. 5. 19.	혼인신고
2014년	장녀 박서연 출생
2016년	경기도 OO시 아파트 84㎡ 매수(피고 단독 명의). 원고의 혼전 예금 6천만원 및 친정 지원금 5천만원이 계약금·중도금에 투입됨
2018년	장남 박준우 출생
2019년	원고, 둘째 출산 후 퇴사하여 전업주부로 육아·살림 전담
2024년	피고, 신용대출 3천만원 취득(용도 불명, 원고에게 미고지). 원고, 학원 파트타임 강사로 복귀(월 약 120만원)
2025. 3.경	피고의 야근·출장 증가, 휴대폰 관리 이상 징후
2025. 11. 8.	원고, 피고가 두고 간 태블릿에서 동기화된 메신저로 상간자 이OO와의 부정행위 증거 발견(대화 내용, 사진)
2025. 11. 15.	피고, 부정행위 인정("1년 정도 만났다"), 재발 방지 약속
2026. 2. 6., 2. 20.	피고, 상간자와 지방 출장 동행 및 호텔 투숙(카드 내역으로 확인)
2026. 3. 2.	부부싸움 중 피고가 원고를 밀쳐 벽에 부딪혀 좌측 팔 타박상(전치 2주). 장녀가 목격. 이후 사실상 별거 시작(피고 안방, 원고 아이들 방)
2026. 6. 10.	피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주하여 별거 개시
2026. 6.~현재	피고, 생활비를 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 자녀 학원비 연체 발생
2026. 7.경	피고가 예금 일부를 본인 모친 계좌로 이체한 정황(시누이 진술, 미확인)

3. 관련 법률

3.1.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례는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 있는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배우자 아닌 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하며, 제6호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3.2. 위자료 청구권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민법 제806조(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843조(재판상 이혼의 효과)는 이혼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위자료 산정 시 혼인 기간,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당사자의 연령·재산·사회적 지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혼인공동생활의 평화를 침해하여 배우자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후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3.3. 재산분할 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 이혼 후 부양, 위자료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가집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이며, 명의와 무관하게 쌍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합니다.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육아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며, 통상 기여도를 50:50으로 추정합니다.

3.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민법 제837조, 제909조)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주 양육자,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5. 양육비(민법 제837조 제4항, 제5항)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 수준,

부모의 경제력, 양육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3.6. 증거의 적법성

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는 형사소송만큼 엄격하지 않으나,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기기를 확인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4. 법률 적용 분석

4.1. 재판상 이혼 사유의 존부

결론: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1호 부정행위: 피고는 2025년 3월경부터 약 1년간 직장 후배 이OO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발견하여 추궁한 후에도 202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출장 중 호텔에 동반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어젯밤 좋았다", "호텔 예약해 둘게"), 사진, 카드 이용내역(호텔 결제 2건)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입니다.

제6호 중대한 사유: 부정행위 외에도 피고는 2026년 3월 2일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전치 2주), 이를 장녀가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별거에 들어가면서 생활비를 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자녀 학원비가 연체되는 등 부양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7월경 재산을 모친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 은닉 시도 정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2. 위자료 청구

4.2.1. 배우자(피고)에 대한 위자료

예상 금액: 5,000만원~8,000만원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 혼인 기간:** 14년(장기)
- 파탄 원인:** 피고의 계속적·반복적 부정행위, 폭력, 생활비 감액 등 전적으로 피고에게 책임
- 원고의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 발견 후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재차 배신당함. 폭력 피해.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부담
- 피고의 경제력:** 연봉 9,800만원, 퇴직급여 약 1억 2천만원 예상
- 원고의 경제력:** 월 120만원(파트타임)
- 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유사 사례에서 혼인 기간 10년 이상, 계속적 부정행위, 폭력이 있는 경우 위자료가 5,000만원~1억원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이 중대하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5,0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2.2. 상간자(이OO)에 대한 위자료

예상 금액: 2,000만원~3,000만원

상간자는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약 1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발견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고의로 혼인공동생활의 평화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간자의 경제력, 부정행위의 주도성 등을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간자는 피고의 직장 후배로 경제적 종속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지속적·반복적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2,000만원~3,000만원 수준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전략: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신원(주소 등)을 특정해야 하므로, 필요시 피고를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가사소송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344조) 또는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347조)를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4.3. 재산분할

4.3.1.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재산 항목	명의	가액(추정)	비고
아파트(경기도 OO시)	피고	8억 5천만원	2016년 매수. 원고의 혼전 예금 6천만원 및 친정 지원금 5천만원 투입
주택담보대출	피고	-2억 1천만원	아파트 담보
피고 예금·적금	피고	4천만원	추정액. 정확한 금액은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확인 필요
피고 주식계좌	피고	미상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확인 필요
피고 퇴직급여	피고	1억 2천만원	추정액. 재직 중이므로 분할 대상 여부 검토 필요
원고 예금	원고	1,500만원	
원고 자동차	원고	1,800만원	2021년식
신용대출	피고	-3천만원	2024년 취득, 용도 불명

합계(순자산)	약 6억 9,300만원	주식계좌 제외, 퇴직급여 포함 시
---------	--------------	--------------------

주요 쟁점:

-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기여:** 원고는 아파트 매수 시 본인의 혼전 예금 6천만원과 친정 지원금 5천만원(합계 1억 1천만원)을 계약금·중도금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시 원고에게 우선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체내역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피고는 현재 재직 중이나 퇴직급여 추정액이 약 1억 2천만원입니다. 판례는 퇴직급여가 혼인 중 근로의 대가로 형성된 것이라면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혼인 전 근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제외해야 하므로, 피고의 입사 시기를 확인하여 혼인 후 근로 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급여만을 분할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은닉 재산:** 피고가 2026년 7월경 예금 일부를 모친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 직후 처분금지가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을 신청하여 피고 명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청(가사소송법 제24조)을 통해 피고 명의 전체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모친 계좌로의 이체 내역을 추적해야 합니다.
- 신용대출 3천만원:** 피고가 2024년 취득한 신용대출 3천만원의 용도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이 대출금이 피고 개인의 사적 용도(예: 상간자와의 교제비)로 사용되었다면 소극재산(채무)에서 제외하거나, 분할 비율 산정 시 피고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카드 이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대출금 사용처를 추적해야 합니다.

4.3.2. 분할 비율

예상 비율: 원고 60% : 피고 40% 또는 원고 55% : 피고 45%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고려 요소:

- 원고의 기여:** 원고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였고, 2024년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주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육아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며, 통상 기여도를 50:50으로 추정합니다.
-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특별 기여:** 원고는 아파트 매수 시 본인의 혼전 예금 및 친정 지원금 합계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시 원고에게 우선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분할 비율이 50%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유책성:** 피고는 부정행위, 폭력, 생활비 감액, 재산 은닉 시도 등으로 혼인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분할 비율을 감액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분할 비율이 55%~6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산정 예시(퇴직급여 포함, 주식계좌 제외 시):

- 순자산 합계: 약 6억 9,300만원
- 원고의 아파트 기여분(우선 귀속): 1억 1천만원
- 잔여 재산: 5억 8,300만원
- 원고 분할 비율 60% 적용 시: 5억 8,300만원 × 60% = 약 3억 5천만원
- 원고 총 분할액: 1억 1천만원 + 3억 5천만원 = **약 4억 6천만원**

4.3.3. 분할 방법

원고는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학교·생활환경 유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소유권 이전 + 대출 승계:** 아파트(시세 8억 5천만원, 대출 2억 1천만원, 순가액 6억 4천만원)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합니다. 원고의 분할액(약 4억 6천만원)에서 아파트 순가액(6억 4천만원)을 차감한 차액(약 1억 8천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원고의 현재 소득(월 120만원)으로는 대출 승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친정의 지원 또는 대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2. **아파트 공동 소유 + 거주권 설정:** 아파트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 소유로 하되, 원고에게 거주권을 설정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하도록 하고, 이후 매각하여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3. **아파트 매각 후 분할:**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출을 상환한 후 잔액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원고와 자녀의 주거 안정을 해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권고 방안: 제1안(아파트 소유권 이전 + 대출 승계)을 우선 추진하되, 원고의 대출 승계가 어려운 경우 친정의 지원 또는 피고에게 대출 상환 후 이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4.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결론: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고려 요소:

주 양육자: 원고는 자녀 출생 이후 현재까지 주 양육자로서 학교·학원·병원 등 모든 양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친정모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등하교를 돕고 있어 양육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양육 환경:**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현재 학교와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는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부적격 사유:** 피고는 2026년 3월 2일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를 장녀(초6)가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심리적 외상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는 별거 후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자녀 학원비가 연체되는 등 부양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 **자녀의 의사:** 장녀는 만 12세로 가정법원은 통상 만 10세 이상 자녀의 의사를 청취합니다. 장녀가 원고와의 생활을 희망한다면 이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피고가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5. 양육비

예상 금액: 자녀 1인당 월 100만원~120만원, 총 월 200만원~240만원

양육비 산정 시 고려 요소:

- **피고의 소득:** 세전 연봉 약 9,800만원(월 약 817만원)
- **원고의 소득:** 월 약 120만원
- **자녀의 나이 및 수:** 장녀(초6), 장남(초2)
- **자녀의 생활 수준:** 학원비 등 교육비 지출이 있음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3년 개정)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약 937만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12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원고가 주 양육자로서 직접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부담할 양육비는 이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감치를 신청하여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양육비 채권에 기하여 피고의 급여·예금 등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의 급여 지급자(회사)에게 양육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4.6. 면접교섭

피고는 별거 후 2주에 한 번 정도 자녀들을 만나고 있으며, 자녀들과의 관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고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일시: 매월 제2, 제4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1박 2일)
- 면접교섭 장소: 피고의 거주지 또는 쌍방이 합의한 장소
- 면접교섭 시 상간자와의 동석 금지
-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강제하지 않음

5. 증거 분석

5.1. 확보된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증거	증거능력	증명력	입증 사항
메신저 대화 캡처(태블릿 화면 촬영본 약 40장)	인정 가능성 높음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기기를 확인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됨(판례). 원고는 피고가 두고 간 태블릿에서 동기화된 메신저를 확인한 것으로, 불법적인 해킹이나 절취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높음 "어젯밤 좋았다", "호텔 예약해 둘게" 등 구체적 내용이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함.	피고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두 사람 사진 3장	인정됨 메신저 대화와 함께 확보된 사진으로 증거능력 인정.	높음 피고와 상간자의 친밀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입증.	피고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피고 카드 이용내역(가족카드 명세서, 호텔 결제 2건)	인정됨 가족카드 명세서는 원고가 적법하게 수령한 문서.	높음 2026년 2월 6일, 2월 20일 지방 호텔 결제 내역이 부정행위를 뒷받침.	피고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계속
2026. 3. 2. 상해 진단서(전치 2주)	인정됨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문서.	높음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피고의 폭력(민법 제840조 제6호)
당시 팔 사진	인정됨	중간 진단서와 함께 상해 사실을 보강.	피고의 폭력
장녀의 진술(녹취 없음)	인정됨 법원은 자녀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음(다만 자녀의 심리적 부담 고려).	중간~높음 폭력 사건을 목격한 직접 증인. 다만 녹취가 없으므로 법정에서 진술해야 함.	피고의 폭력, 자녀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

2016년 아파트 계약금·중도금 이체내역	인정됨 금융기관 거래내역.	높음 원고의 혼전 예금 6천만원 및 친정 지원금 5천만원이 아파트 매수에 투입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재산분할 시 원고의 특별 기여
생활비 입금내역(2026. 6. 이후 금액)	인정됨 금융기관 거래내역.	높음 피고가 생활비를 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피고의 부양의무 방기(민법 제840조 제6호), 양육비 산정 시 고려

5.2. 태블릿 메신저 확인의 적법성

쟁점: 피고가 "원고가 내 태블릿을 무단으로 열어본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리: 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는 형사소송만큼 엄격하지 않으나,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기기를 확인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 원고는 피고가 두고 간 태블릿에서 동기화된 메신저를 확인한 것으로, 불법적인 해킹이나 절취가 아닙니다.
- 피고가 태블릿을 두고 나간 것은 과실이며, 원고가 이를 확인한 것은 부정행위 의심이라는 정당한 동기에 기한 것입니다.
- 원고는 메신저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소송 증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태블릿 메신저를 확인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로 볼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장에서 증거 수집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 적법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5.3. 추가 확보가 필요한 증거

1. **피고의 금융거래정보:** 가사소송법 제24조에 따라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신청하여 피고 명의 전체 예금·적금·주식계좌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7월경 모친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추적해야 합니다.

피고의 퇴직급여 산정 자료: 피고의 입사 시기, 현재까지 근속 기간, 퇴직급여 추정액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대출 3천만원의 사용처:** 피고의 카드 이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와의 교제비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재산분할 시 피고에게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4. **상간자의 신원 정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간자의 성명·주소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피고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자녀의 의사:** 장녀(만 12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법원 조사관의 가정조사 또는 자녀 면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녀가 원고와의 생활을 희망한다면 이는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6. **원고의 양육 능력 입증 자료:** 원고가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해 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 학원 수강증, 병원 진료기록, 친정모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6. 결론 및 소송 전략

6.1. 종합 평가

본 사건은 피고의 계속적·반복적 부정행위, 폭력, 생활비 감액, 재산 은닉 시도 등으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사안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위자료(배우자 및 상간자),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모두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2. 소송 전략

6.2.1. 소송 제기 전 조치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긴급):**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 직후 즉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피고 명의 아파트·예금·주식 등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모친 계좌로 이체한 예금을 추적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 메신저 대화 캡처, 사진, 카드 이용내역, 진단서, 이체내역 등 확보된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시 공증을 받아 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신원 확인:** 피고의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피고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6.2.2. 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원고가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므로 수원가정법원 또는 해당 지역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상간자 이OO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또는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

5. 미성년자 박서연, 박준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미성년자 박서연, 박준우의 양육비로 각 월 110만원씩 합계 월 220만원을 매월 말일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라.
7. 피고는 미성년자 박서연, 박준우를 매월 제2, 제4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8.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 혼인 경위 및 가족관계
- 혼인 파탄 경위와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 제6호 중대한 사유)
- 위자료 청구(배우자 및 상간자)
- 재산분할 청구(분할 대상 재산, 원고의 특별 기여, 분할 비율)
-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 면접교섭

입증방법:

-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 갑 제4호증: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갑 제5호증: 메신저 대화 캡처 40장
- 갑 제6호증: 피고와 상간자 사진 3장
- 갑 제7호증: 피고 카드 이용내역(호텔 결제 2건)
- 갑 제8호증: 2026. 3. 2. 상해 진단서
- 갑 제9호증: 상해 부위 사진
- 갑 제10호증: 2016년 아파트 계약금·중도금 이체내역
- 갑 제11호증: 생활비 입금내역(2026. 6. 이후)
- 갑 제12호증: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인: 친정모(양육 지원), 장녀(폭력 목격, 필요시)

6.2.3. 소송 진행 중 조치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청:** 소장 제출 후 즉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신청하여 피고 명의 전체 금융자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2. **가정조사 신청:** 법원에 가정조사를 신청하여 조사관이 원고 및 피고의 가정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3. **조정 참여:** 가정법원은 통상 소송 제기 후 조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조정에서 피고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최소 요구(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대응:** 피고가 "원고가 태블릿을 무단으로 열어본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거나, "혼인 파탄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6.2.4. 상간자에 대한 소송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고, 별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병합 제기 시 소송 경제적이거나,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우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 신원 확인 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간자의 예금·급여채권 등을 보전해야 합니다.

6.3. 예상 소송 기간 및 비용

6.3.1. 소송 기간

단계	예상 기간	비고
소장 제출 ~ 제1회 조정기일	1~2개월	법원의 사건 적체 상황에 따라 변동
조정 절차	2~4개월	조정 성립 시 종료.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이행
소송 절차(제1심)	6~12개월	쟁점의 복잡도, 증거조사 범위에 따라 변동. 재산분할·친권 다툼이 있으면 장기화

항소심(항소 시)	6~10개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총 예상 기간	1년~2년	조정 성립 시 6개월 이내 종료 가능. 항소까지 갈 경우 2년 이상 소요

본 사건은 이혼 사유가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피고가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조정 또는 제1심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고가 재산분할·친권을 강하게 다투거나 항소할 경우 1년 6개월~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6.3.2. 소송 비용

인지대(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납부):

- 이혼 청구: 5,000원(정액)
- 위자료 청구(배우자 6,000만원): 약 35만원
- 위자료 청구(상간자 2,500만원): 약 17만원
- 재산분할 청구(4억 6천만원): 약 215만원
- 친권·양육자 지정: 5,000원(정액)
- 양육비 청구: 5,000원(정액)
- **합계: 약 270만원**

송달료: 약 20만원~30만원(당사자 수, 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

변호사 비용(선임 시):

- 착수금: 1,000만원~2,000만원
- 성공보수금: 회수액의 10%~15%(위자료·재산분할 회수액 기준)
- 본 사건은 청구 금액이 크고 쟁점이 복잡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다만 원고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월 소득이 42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무료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4.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

6.4.1. 피고의 재산 은닉

위험: 피고가 소송 제기 전후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모친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응:

- 소송 제기 즉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피고 명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에 대한 처분 금지
-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청하여 피고 명의 전체 금융자산 파악
- 모친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추적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406조) 제기 검토. 피고가 재산분할을 면탈할 목적으로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6.4.2. 피고의 퇴직

위험: 피고가 소송 중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한 후 은닉하거나 소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응:

- 소송 제기 후 피고의 퇴직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퇴직급여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으로서 가압류 대상이 됨
- 피고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면 즉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회수

6.4.3. 피고의 친권·양육권 다툼

위험: 피고가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주장하며 친권·양육권을 강하게 다툼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대응:

- 원고가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해 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학교 생활기록부, 학원 수강증, 병원 진료기록, 친정모 진술서 등) 충분히 확보
- 가정조사 신청하여 조사관이 원고의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조사하도록 함
- 피고의 폭력 사건(2026. 3. 2.)을 장녀가 목격한 사실을 강조하여 피고의 양육 부적격성 주장
- 필요시 장녀(만 12세)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의사를 진술하게 할 수 있으나, 자녀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6.4.4. 증거의 증거능력 다툼

위험: 피고가 "원고가 태블릿을 무단으로 열어본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 캡처의 증거능력을 다툼 수 있습니다.

대응:

- 소장에서 증거 수집 경위를 상세히 기재: "피고가 두고 간 태블릿에서 동기화된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불법적인 해킹이나 절취가 아님. 부정행위 의심이라는 정당한 동기에 기한 것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
- 판례를 인용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 메시지 대화 외에도 카드 이용내역(호텔 결제 2건), 사진 등 다른 증거가 있으므로 메시지 대화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부정행위 입증 가능

6.5. 최종 권고 사항

1. **즉시 변호사 선임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본 사건은 청구 금액이 크고 쟁점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원고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우선 신청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2. **소송 제기 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피고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 즉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세요. 특히 아파트, 예금, 주식, 퇴직급여채권에 대한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3. **증거 보전 및 추가 확보:** 현재 확보한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고의 퇴직급여 산정 자료, 신용대출 사용처, 상간자 신원 정보, 자녀의 의사, 원고의 양육 능력 입증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세요.
4. **조정 절차 적극 활용:**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피고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최소 요구(이혼, 위자료 합계 8,000만원 이상, 재산분할 4억원 이상,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200만원 이상)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5. **자녀의 심리적 안정 우선:** 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이 심리적 외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장녀가 폭력 사건을 목격한 만큼, 필요시 아동심리상담을 받게 하고 상담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생활비 가처분 신청 검토:** 피고가 생활비를 월 100만원으로 감액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혼인비용분담 청구의 소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적정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3조, 가사소송법 제62조).

6.6. 예상 결과

본 사건은 피고의 책임이 명백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인용 가능성 매우 높음(95% 이상)
- **위자료(배우자):** 5,000만원~8,000만원 인정 예상
- **위자료(상간자):** 2,000만원~3,000만원 인정 예상

재산분할: 원고 55%~60% 비율로 4억원~5억원 인정 예상. 아파트 소유권 이전 가능성 높음

- **친권·양육권:** 원고 지정 가능성 매우 높음(90% 이상)
-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만원~120만원, 총 월 200만원~240만원 인정 예상

다만 소송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예상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

7.1. 남편 태블릿을 본 것이 문제가 되는지

원고가 피고가 두고 간 태블릿에서 동기화된 메신저를 확인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로 볼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기기를 확인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원고는 불법적인 해킹이나 절취를 한 것이 아니며, 부정행위 의심이라는 정당한 동기에 기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2.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혼인공동생활의 평화를 침해하여 배우자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본 사안에서 상간자는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약 1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발견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상 금액은 2,000만원~3,000만원입니다.

7.3. 전업주부 기간이 길어 재산분할이 불리한지

불리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육아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며, 통상 기여도를 50:50으로 추정합니다. 오히려 원고는 아파트 매수 시 본인의 혼전 예금 및 친정 지원금 합계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분할 비율이 50%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유책성(부정행위, 폭력, 생활비 감액, 재산 은닉 시도)을 고려하면 원고의 분할 비율이 55%~6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7.4.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는지

소송 제기 즉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피고 명의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급여채권 등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청을 통해 피고 명의 전체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모친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추적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재산분할을 면탈할 목적으로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5.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조정 성립 시 6개월 이내 종료 가능하며, 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제1심 판결까지 1년~1년 6개월, 항소심까지 갈 경우 총 1년 6개월~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사유가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피고가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조정 또는 제1심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 관점 검토 보고서

본 보고서는 14년간의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의 계속적 부정행위, 폭력, 생활비 감액 등으로 파탄에 이른 이혼 사건에 대한 법률 분석 보고서를 검토한 것입니다. 원고 김지현(처)이 피고 박성훈(부)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간자 이OO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복합 가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원고 주장의 설득력

원고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법리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설득력이 높습니다.

이혼 청구의 타당성: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모두 원용하고 있으며, 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2025년 3월경부터 약 1년간 지속되었고, 원고가 이를 발견하여 추궁한 후에도 2026년 2월 두 차례 호텔 동반 투숙으로 재차 배신한 점, 2026년 3월 2일 폭행으로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점, 별거 후 생활비를 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방적 감액한 점 등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사실들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법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14년, 피고의 전적인 책임, 원고의 정신적 고통,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청구액 산정은 합리적입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8,000만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3,000만원은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으로, 실제 인용액은 이보다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논리: 재산분할 청구에서 원고가 아파트 매수 시 혼전 예금 6천만원과 친정 지원금 5천만원을 투입한 점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이를 우선 귀속받은 후 잔여 재산에 대해 60:40 또는 55:45의 분할 비율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친정 지원금 5천만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이체 내역이 명확히 입증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피고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판례의 경향에 부합하나, 혼인 전 근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 청구: 원고가 2019년부터 약 5년간 전업주부로 육아를 전담하고 현재도 주 양육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의 폭력을 장녀가 목격한 점 등은 원고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에서 피고의 소득(연봉 9,800만원)과 원고의 소득(월 120만원)을 고려할 때,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구체적 금액 제시가 필요합니다.

청구취지의 명확성: 보고서는 청구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분석 내용으로부터 이혼, 위자료(배우자 및 상간자),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장 작성 시에는 각 청구를 구체적 금액과 함께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 증거의 충분성

제출 예정 증거의 증명력은 전반적으로 높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증거: 태블릿에서 확인한 메신저 대화 내용("어젯밤 좋았다", "호텔 예약해 둘게"), 사진, 카드 이용내역(호텔 결제 2건)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가 2025년 11월 15일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실도 중요한 자백 증거입니다. 다만 태블릿 확인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툴 여지가 있으나, 판례 경향상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력 입증 증거: 2026년 3월 2일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전치 2주)는 직접 증거이며, 장녀 박서연(당시 초등학교 6학년)의 목격 진술은 보강 증거로 기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진술은 법원이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이웃의 목격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비 감액 입증 증거: 피고의 계좌 이체 내역, 자녀 학원비 연체 통지서 등은 생활비 감액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별거 전후의 생활비 지급 내역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재산 관련 증거: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원고의 혼전 예금 통장 사본, 친정 지원금 이체 내역은 재산분할 청구의 핵심 증거입니다. 특히 친정 지원금 5천만원의 이체 내역이 명확히 보관되어 있다면 특유재산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친정 부모의 진술서, 증여계약서 등 보완 증거가 필요합니다.

은닉 재산 입증의 어려움: 피고가 예금 일부를 모친 계좌로 이체한 정황은 시누이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증거로서 증명력이 약합니다.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청을 통해 피고 명의 전체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모친 계좌로의 이체 내역을 추적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조속히 신청하여 추가 재산 은닉을 방지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산정 증거: 피고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추계서 등을 통해 퇴직급여 추정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의 입사 시기를 확인하여 혼인 전 근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신용대출 용도 입증: 피고의 신용대출 3천만원 용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카드 이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와의 교제비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분할 비율 산정 시 피고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 필요 증거: 상간자 이○○의 인적사항(주소 등) 특정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피고의 전체 금융자산 파악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청, 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의 생활비·교육비 지출 내역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상대방 예상 반박

피고 박성훈은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항변: 피고는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을 축소하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후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확보한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이용내역은 2025년 3월경부터 2026년 2월까지 지속적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있으며, 피고 스스로 2025년 11월 15일 "1년 정도 만났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항변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폭력에 대한 항변: 피고는 폭행이 우발적이었거나 원고의 과도한 언행에 대한 방어적 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전치 2주)와 장녀의 목격 진술이 있으므로, 폭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의 경위나 정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감액에 대한 항변: 피고는 별거 후 자신의 생활비도 필요하고, 원고가 파트타임으로 소득이 있으므로 생활비를 감액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100만원으로는 원고와 자녀 2명의 생활이 어렵고, 자녀 학원비가 연체된 사실은 부양의무 방기를 입증하므로, 이러한 항변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항변: 피고는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원고의 혼전 예금 6천만원과 친정 지원금 5천만원이 아파트 매수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체 내역이 불명확하거나 친정 지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고 다툼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급여는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판례에 반하므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용대출 3천만원은 가계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원고의 분할 비율 60% 주장에 대해, 피고도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50:50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에 대한 항변: 피고는 자신도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원고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 양육자였고 현재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의 폭력을 장녀가 목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항변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의 적법성에 대한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태블릿을 무단으로 확인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을 취득한 것은 사생활 침해이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기기를 확인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가 두고 간 태블릿에서 동기화된 메신저를 확인한 것으로, 피고의 휴대폰을 강제로 탈취하거나 해킹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항변: 상간자 이OO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후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거나, 피고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기망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2025년 3월경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항변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4. 판결 예측

인용(승소) 가능성: 85% / 기각(패소) 가능성: 15%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기보다는 일부 감액 또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별로 예측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가능성 95%

피고의 계속적·반복적 부정행위, 폭력, 생활비 감액 등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의 이혼 사유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실, 원고 발견 후에도 재차 배신한 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혼 청구는 거의 확실히 인용될 것입니다. 다만 피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피고의 이혼 반소는 기각될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배우자): 일부 인용 가능성 90%, 인용 예상액 4,000만원~6,000만원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8,000만원은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혼인 기간 14년, 피고의 전적인 책임, 원고의 정신적 고통, 피고의 경제력(연봉 9,800만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것이나, 실제 인용액은 4,000만원~6,000만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혼인 기간 10년 이상, 계속적 부정행위, 폭력이 있는 경우 위자료가 3,000만원~7,000만원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의 책임이 중대하므로 중상위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상간자): 일부 인용 가능성 80%, 인용 예상액 1,500만원~2,500만원

상간자 이OO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가 청구한 2,000만원~3,000만원은 다소 높은 금액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간자의 경제력, 부정행위의 주도성 등을 고려하여 1,500만원~2,500만원 수준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신원 특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일부 인용 가능성 90%, 분할 비율 원고 55%~60%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될 것이나, 원고의 주장대로 60% 분할 비율이 인정될지는 다음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원고의 혼전 예금 6천만원과 친정 지원금 5천만원이 아파트 매수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이체 내역으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우선 귀속될 것입니다. 이 경우 원고의 분할 비율이 55%~6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친정 지원금의 이체 내역이 불명확하거나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판단된다면, 특유재산 주장이 일부 배척되어 분할

비율이 50%~55%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의 퇴직급여는 혼인 후 근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넷째, 신용대출 3천만원의 용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극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피고의 유책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분할 비율이 일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원고의 분할 비율은 55%~60%, 분할액은 3억 8천만원~4억 2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귀속 방법: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대출 승계를 희망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타당하나, 원고의 현재 소득(월 120만원)으로는 대출 승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출 승계 능력을 심리한 후, 가능하다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차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것이나, 불가능하다면 아파트 매각 후 분할하거나 공동 소유로 하되 원고에게 거주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 지정 가능성 95%

원고가 2019년부터 약 5년간 전업주부로 육아를 전담하고 현재도 주 양육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의 폭력을 장녀가 목격한 점, 자녀들이 현재 학교와 생활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들의 의사를 청취할 수 있으며, 특히 장녀 박서연(초6)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양육비: 인용 가능성 95%, 인용 예상액 월 150만원~200만원(자녀 2명 합계)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피고의 소득(연봉 9,800만원, 월 약 817만원)과 원고의 소득(월 120만원)을 고려할 때,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는 월 150만원~200만원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녀의 실제 생활비·교육비 지출 내역, 피고의 재산 상황,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증액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인용 가능성 95%

피고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것이나, 피고의 폭력 전력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 월 2~4회, 방학 중 일정 기간 등의 면접교섭이 인정되며,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방법이 정해질 것입니다.

증거의 적법성: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 85%

피고가 태블릿 확인의 위법성을 다룰 가능성이 있으나, 판례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기기를 확인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가 두고 간 태블릿에서 동기화된 메신저를 확인한 것으로, 피고의 휴대폰을 강제로 탈취하거나 해킹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피고의 항변에 대비하여 증거 수집의 정당성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 이혼

소송 기간: 이혼소송은 통상 1심 기준 6개월~1년이 소요되며, 본 사건의 경우 쟁점이 다수이고 재산분할·친권 등 복합적 사안이므로 8개월~1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금융거래정보 회신, 상간자 신원 특정 등 부수 절차가 필요하므로 초기 준비 기간이 중요합니다. 항소 시 추가로 6개월~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종합 판단: 본 사건은 피고의 유책성이 명백하고 원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여 전반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예상됩니다.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구체적 금액은 원고의 청구액보다 다소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친정 지원금의 입증 여부, 퇴직급여 산정의 정확성, 은닉 재산 추적 성공 여부가 재산분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양육비는 법원 산정기준표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5. 판사 코멘트

보강이 필요한 부분:

첫째, 친정 지원금 5천만원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이 명확히 보관되어 있다면 문제없으나, 만약 현금 수수 또는 이체 내역이 불명확하다면 친정 부모의 진술서, 당시 친정 부모의 재산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예금 잔액증명서, 부동산 매각 내역 등), 증여계약서 등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만약 차용이라면 차용증, 변제 약정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피고의 퇴직급여 산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피고의 입사 시기를 확인하여 혼인 전 근로 기간(2012년 5월 19일 이전)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회사의 퇴직금 규정, 피고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여 퇴직급여 추정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피고의 은닉 재산 추적이 필요합니다. 시누이의 진술만으로는 증명력이 약하므로,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청을 통해 피고 명의 전체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모친 계좌로의 이체 내역을 추적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조속히 신청하여 추가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재산분할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서 분할 비율 산정 시 피고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용대출 3천만원의 용도를 추적해야 합니다. 피고의 카드 이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대출금이 상간자와의 교제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에 성공한다면 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분할 비율 산정 시 피고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양육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월평균 생활비(식비, 의류비, 용돈 등), 교육비(학원비, 교재비 등), 의료비, 문화비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비 영수증, 카드 이용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양육비 산정에 유리합니다.

여섯째, 상간자 이○○의 신원을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피고를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신원 특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약한 부분과 보완 방향:

첫째, 태블릿 확인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태블릿을 집에 두고 간 경위, 원고가 태블릿을 확인하게 된 경위, 확인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피고가 평소 사용하던 태블릿을 거실에

두고 출근하였고, 원고가 청소 중 우연히 메신저 알림을 보게 되어 확인하였다" 등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고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예: 피고의 야근·출장 증가, 휴대폰 관리 이상 징후 등).

둘째,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고는 폭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진단서 외에 추가 증거(예: 상처 부위 사진, 이웃의 목격 진술, 112 신고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녀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나, 미성년 자녀의 진술은 법원이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가능하다면 장녀가 작성한 일기나 그림 등 간접 증거를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원고의 경제력 부족이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고는 현재 파트타임으로 월 120만원을 벌고 있으나, 양육비와 재산분할로 자녀 양육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정규직 취업 계획, 친정의 지원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 양육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쟁점이 될 핵심 포인트:

첫째, 재산분할에서 친정 지원금 5천만원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는 원고의 분할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피고의 은닉 재산 추적 성공 여부가 재산분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통해 피고의 전체 재산을 파악하고, 모친 계좌로의 이체 사실을 입증한다면 분할 대상 재산이 증가하고 원고의 분할 비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대출 3천만원의 용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피고는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려 할 것이나, 원고가 상간자와의 교제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소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태블릿 확인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판례 경향상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정당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위자료 금액 산정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책임이 중대하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위자료 감액 사유를 주장할 것입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소송 전략상 권고 사항:

첫째, 소송 제기 전 처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하여 피고의 재산 은닉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등 피고 명의의 전체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통해 피고의 전체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친정 지원금 이체 내역, 피고의 카드 이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자녀 양육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필요적 조정사건이므로 재판 전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책임을 인정하고 합리적 조건을 제시한다면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피고가 성실한 협상 의지가 없다면 조정을 조기에 종료하고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특히 장녀가 법정에서 진술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변호사 선임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본 사건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 복합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처분금지가처분, 금융거래정보 회신, 문서제출명령 등 다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 기반 분석

본 판결 예측은 AI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본 보고서는 AI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